

2023년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 공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지역의 청년 고용 실적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대와 고용 안정 및 신규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본사(지사*) 및 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중소기업

* 사업장이 지사인 경우, 지사 내(경북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로 한함

** 2022년도 12월 말 기준

나.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 증가(인원)가 있으면서, 2023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 예시) 22년 12월 말 고용인원 30명 → 신청일 현재 고용인원 31명 신청 가능
(신규 채용 2명 = 대체인력 1명 + 신규인원 1명)

* 청년(만 19~39세 이하)(단, 외국인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

* 신규 청년채용인원에 따른 지원기준

- 2인 이상 ~ 3인 이하: 10백만원(단,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 4인 이상 ~ 5인 이하: 20백만원
- 6인 이상 ~ 7인 이하: 30백만원
- 8인 이상 : 40백만원

※ 시군별 배정기업 수 및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및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

※ 1기업 1지원 : 다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 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

다. 대상업종: 제조업(제조·생산시설을 갖춘 기업) * 공장등록증 확인
 라. 모집규모: 총 40개사 정도

시·군명	지원기업 수	시·군명	지원기업 수
포항시	4	경산시	5
김천시	2	의성군	1
안동시	2	청송군	1
구미시	6	영덕군	1
영주시	2	청도군	2
영천시	5	칠곡군	4
상주시	2	울진군	1
문경시	2		

3. 지원내용: 신규 청년 채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

- 2인 이상 ~ 3인 이하: 10백만원(단,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 4인 이상 ~ 5인 이하: 20백만원
- 6인 이상 ~ 7인 이하: 30백만원
- 8인 이상 : 40백만원

지원 구분	지원내용	관 련 법
재 정 적 인센티브 (직접 지원)	• 근로환경개선 – 휴게실, 기숙사, 목욕시설, 화장실, 체력단련실, 구내 식당,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근로환경개선 자본재 구입 지원 ※ <u>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제외</u>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 조례 제5조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근로환경개선사업 세부 지원내용

가. 시설 개보수 지원: 휴게실, 기숙사, 체력단련실, 목욕시설, 화장실, 구내식당 등 노후화로 인한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나. 물품 구입 지원: 냉난방기, 운동기구,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기숙사, 휴게실, 식당 등 근로자 복지시설 내 근로환경 물품 구입 비용 지원

- 단, 물품 구입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지원금액의 50% 초과 불가

* 자가인 경우 시설 개보수 + 물품 구입 지원(물품 구입만 지원 불가능)

* 임대사업장은 물품 구입만 지원 가능

- 물품 및 한도액 설정(초과 금액 기업부담, 아래 물품 이외 지원 불가능)

• 냉난방기	1개당 3,500천원 이내	• 세탁기	1개당 1,000천원 이내
• 운동기구	1개당 1,500천원 이내	• 건조기	1개당 1,500천원 이내
• 안마기기	1개당 2,500천원 이내	• 공기청정기	1개당 1,000천원 이내
• 냉장고(업소용 기준)	1개당 1,800천원 이내	• 소파(4인기준)	1개당 700천원 이내
• 냉장고(가정용 기준)	1개당 1,000천원 이내	• 청소기	1개당 700천원 이내
• TV	1개당 1,300천원 이내	• 커피머신	1개당 700천원 이내
• 에어컨(벽걸이형 기준)	1개당 1,000천원 이내	• 비데	1개당 400천원 이내
• 에어컨(천장형 기준)	1개당 1,500천원 이내	• 컨테이너(휴게실용도)	1개당 8,000천원 이내

다. 유의사항: 지원 시설 및 물품 등은 최소 3년간 유지하여야 함

4.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3. 4. 12.(수) ~ 시·군별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일자리창출우수기업.kr>)

다. 신청서류: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붙임】** 1부

- 서식: 경상북도경제진흥원(www.gepa.kr) 또는 시·군 홈페이지 참조

라. 문 의 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89)

- E-Mail: ksjin@gepa.kr

- 주소: (우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4층(임수동) 일자리창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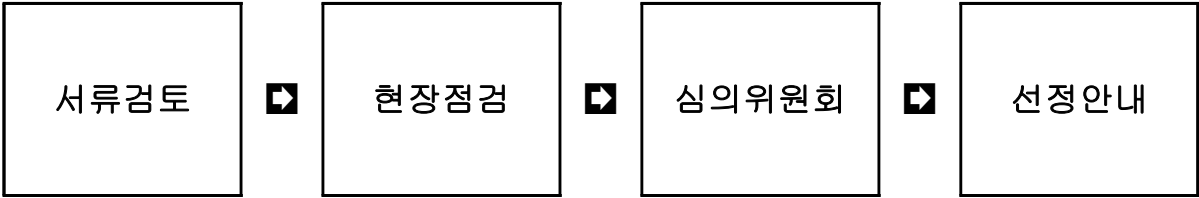
5. 지원 기업 선정

- (1차) 심사대상 선정: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 (2차) 지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정량적 평가: 매출액, 가동년수, 고용성장률, 종업원수
 - 정성적 평가: 사업 목적 및 실현가능성,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장기 재직 가능성, 기업 복지 및 정부 정책 사업 참여 등 평가

《선정(신청) 제외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또는 「경상북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금 수혜 기업 및 최근 2년 이내에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금 수혜 기업 및 그 밖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근로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생산도급(단순노무도급, 생산기반시설 없는 경우)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근무환경 열악 등 심의위원 다수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5. 사업 절차



구 분	내 용		
서류검토	• 사업대상 적격 여부(신청자격 기본 요건, 노동관련 위반사항, 기업 소재지 등) 검토		
현장점검	• 사업계획서 내용 등 사실 여부 및 사업 타당성 현장 확인		
심의위원회	• 제출 서류 바탕으로 심의위원 평가		
	구분	평가지표	
	정량적 평가 (40점)	매출액	10점
		가동년수	10점
		고용성장률	10점
		종업원수	10점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6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장기재직 가능성	
		고용유지 노력 및 향후 청년채용 실시계획	
합계		100점	
※ 평가점수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			
선정안내	• 현지 실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서류 검토: 유선 또는 이메일 통지 - 최종 선정: 개별 안내(선정기업 공문 발송)		

6. 기타사항

- 경상북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해당 부서	지원 내용	비고
청년정책과 (054-880-2763)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우선지원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한도 3억 → 5억원 적용)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0)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한도 3억 → 5억원 적용)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외교통상과 (054-880-2714)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대상 업체 선발 시 우대	선발심사 시 가점 부여
세정담당관 (054-880-2219)	지방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지정년도 다음해 부터 3년간 유예 적용

7.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견적 및 비교견적 포함)
 - [붙임 2]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제출 1]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제출 2]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부(신청일 기준 2022년 12월 말 기준)
 - [제출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 [제출 4] 재무제표(2022)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2)
 - [제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 선정 후 제출서류

- [붙임 3] 결과보고서 1부
- [제출 1] 견적서 1부
- [제출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각 1부
- [제출 3] 통장사본
- [제출 4] 원가계산검토보고서(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한함)

8.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하여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북 소재 기업으로 업체 선정
-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 동일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공사 및 물품 지원 내역이 근로자 공동 사용이 아닌 대표 및 임원, 방문객 등 특정인을 위한 시설·물품일 경우 지원 불가능
- 지원 시설 및 물품은 3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지원목적에 부합 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 ※ 예시) 휴게실에 비치하였던 안마기를 대표실 등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에어컨 등 지원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등
- 상기 유의사항 또는 공고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운영기관의 해석에 따름